

신성모독: 인도네시아에서 종교 자유와 관용의 축소*

김 형 준**

요약

인도네시아에서는 2000년대 이후 신성모독죄 적용이 확대되고 다양화 되는 양상이 나타났다. 과거 신성모독법의 주요 적용대상이 무슬림이었던 반면, 최근에는 타종교도를 포함하게 되었고 인터넷에 게재된 글을 대상으로도 신성모독죄 기소가 이루어졌다. 신성모독죄의 확대적용은 급진적 이슬람 세력으로 하여금 이 법의 실효성을 실감하도록 했다. 그것이 상이한 이슬람 해석을 지지하는 집단이나 개인, 나아가 무슬림이 아닌 종교도에 대한 효과적인 제재 수단으로 작동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건이 언론을 통해 확산됨에 따라 종교와 관련된 모든 상황에 신성모독이라는 잣대가 적용될 수 있음을 일반인들 역시 인식할 수 있게 되었고, 이는 자기검열적 상황을 강화했다. 이 연구에서는 신성모독죄의 성립 배경을 살펴본 후 최근의 주요 사례를 중심으로 신성모독죄가 적용, 강제되는 방식을 검토한다. 이를 통해 이 글에서는 무슬림뿐만 아니라 타종교도에게도 본격적으로 적용되기 시작한 신성모독법이 종교 자유를 축소하고 종교문제에 대한 관용도를 감소시킨다는 주장이 제기될 것이다. 이슬람 중심적 시각이 종교 자유와 종교도간 관계를 규정하는 핵심적 틀로 이해되는 이와 같은

* 이 글을 읽고 유익한 논평을 해주신 세 분의 심사위원에게 감사를 표함. 이 글은 2018년도 강원대학교 대학회계 학술연구조성비로 연구하였음(관리번호-520180077). 이 글은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SNUAC)에서 발행하는 다양성+아시아(DiverseAsia) (2018년 12월호)에 발표한 글을 바탕으로 작성한 것임.

** 강원대학교 문화인류학과 교수, hjunkim@kangwon.ac.kr

상황은 종교적 관용이 인도네시아 사회의 특징으로 받아들여지던 과거와 대비되면서, 이슬람화가 인도네시아 사회에 미친 장기적인 영향을 실감할 수 있도록 한다.

주제어: 인도네시아, 신성모독, 이슬람화, 표현의 자유, 종교 자유, 종교적 관용

I. 들어가는 말

종교적 믿음을 표현하고 종교 의식을 행할 자유, 종교 단체를 만들고 활동할 자유는 개인에게 주어진 당연한 권리처럼 비추어진다. 유엔 세계인권선언(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역시 종교 자유를 보편적 인권의 문제로 바라보면서 종교를 표현하고 변경할 자유가 사상 및 양심의 자유와 같은 기본권에 속함을 지적했다.

신앙생활의 자유를 그 핵심으로 이해한다면, 개인적 믿음이 강조되는 최근 상황에서 종교 자유가 훼손될 가능성은 커 보이지 않는다. 하지만, 이 개념에는 비판의 자유라는 타인에게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내포되어 있다(이충상 2011, 268-269; Sharma 2011, 57-60). 종교에 대한 비판이 제한 없이 용인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대한 명확한 답을 찾기는 쉽지 않다. 세속적 영역과 달리 종교적 영역에서의 비판은 그 적절성을 판단할 ‘객관적’ 자료가 존재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종교 비판의 문제는 사회문화적 맥락과 긴밀한 연관성을 갖게 된다. 동일한 비판이라도 누구에 의해 어떠한 상황 속에서 제기되었는가에 따라 전혀 다른 취급을 받을 수 있다(Lawton 1993, 3-4).

기독교적 전통에서 종교적 표현의 자유는 ‘blasphemy’라 불리는 ‘신성모독’ 혹은 ‘종교모독’의 틀 내에서 다루어졌다. 신성모독은 좁은 의

미에서 ‘신이나 성스러운 것에 대한’, 넓은 의미에서 ‘종교와 종교도와 관련된 것에 대한’ 불경한 언행을 일컫는다. 기독교의 영향력이 강하고 이를 판단할 확고한 집단이 있었을 때 신성모독은 엄중한 죄로 여겨졌다. 중세 유럽에서 신성모독은 살인보다 심각한 죄였고 사형으로 처벌되기까지 했다(Levy 1995, 52-53). 이러한 기독교적 전통을 간직한 서구 국가에서 신성모독죄는 형법에 포함되었고 상당수 국가에서 이러한 법체계가 현재까지도 유지되고 있다. 하지만, 20세기 후반을 거치며 영국, 캐나다, 호주 등에서 신성모독죄가 형법에서 제외되었음을 고려하면(Hunter 2006), 서구 국가에서 더 많은 강조점이 표현의 자유에 주어지기 시작했음을 알 수 있다. 공적 영역에서의 종교적 역할 축소에 따라 신성모독을 도덕적 판단의 대상으로 삼으려는 경향이 강해졌다.

서구 사회와는 다른 양상이 이슬람 전통을 지닌 지역에서 전개되었다. 전통 이슬람 사회에서도 신성모독은 종교에 대한 심각한 도전으로 여겨졌지만, 그에 대한 처벌이 고정되거나 체계화되지 않았으며 지역적 상황에 맞추어 대응이 이루어졌다(Saeed & Saeed 2016). 이와 달리 현대 이슬람권 국가에서는 신성모독을 법제화하려는 흐름이 나타났다. 서구 식민지 법체제에 따라 신성모독죄가 형법에 포함되었던 지역에서는 사문화된 법조항을 부활하여 적용하기도 했고, 이를 국가법 체계에 새로 포함시키려는 경향이 나타나기도 했다(Hassan 2006, 122; Uddin 2011).¹⁾

이슬람권 국가에서 신성모독법 적용의 강화 추세를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는 파키스탄이다. 1990년대를 거치며 파키스탄에서는 신성모독 관련 형법이 구체화되었고 징역이나 벌금이 아닌 사형으로 이를 처벌할 근거가 만들어졌다(Amnesty International 2016, 16-20). 신성모독법 강화는 사회 분위기에 의해 추동됨과 동시에 거기에 영향을 미쳐

1) 중동의 무슬림 국가에서 신성모독법 처벌의 강화 추세와 관련해서는 최영철(2017)을 참조할 것.

서, 이러한 흐름에 반대하는 법조인과 정치인, 인권운동가에 대한 위협과 살해가 자행되었다(Uddin 2011, 48-49). 파키스탄의 사례는 신성모독죄가 종교 자유를 억압하기 위해 어떻게 활용될 수 있으며, 이 과정에서 종교적 소수자에 대한 공세가 어느 정도까지 가혹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가를 예시한다(Shakir 2015, 311).

파키스탄에서처럼 극단화되지는 않았지만, 인도네시아에서 역시 신성모독이 더욱 빈번하고 다양하게 활용되는 양상을 찾을 수 있다. 시아(Shia)파와 아흐마디아(Ahmadiyah) 그리고 소수 종교 집단에 대한 수니파 급진주의 집단의 공세가 신성모독이라는 이름으로 이루어졌고(Hasan 2017; Irawan 2017), 주류에서 벗어난 해석을 제시하는 개인에게도 신성모독죄가 씌워졌다. 신성모독죄의 확대 적용은 ‘이슬람화(Islamization)’ 움직임, 즉 종교적 의무를 실천하고 종교적 관점에서 주변을 바라보려는 무슬림의 증가(김형준 2013, 185)와 관련된다. 이러한 움직임이 지속됨에 따라 주류 이슬람 세력의 해석과 대비되는 시각과 행동에 대한 집합적 대응이 이루어지고 더 많은 무슬림 대중의 공감대를 이끌어냈다.

최근 인도네시아에서 대중적 관심을 받은 두 사건은 신성모독죄의 새로운 적용 방식을 드러냈다. 첫 번째는 자카르타 지사 선거에 출마한 아훅(Ahok)이라는 정치인을 중심으로, 두 번째는 북부 수마트라주 소도시에서 사는 메일리아나(Meiliana)라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발생했다. 이들은 무슬림에 의해 신성모독을 범했다는 비난을 받았고 신성모독죄로 기소되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두 사건에 연루된 개인 모두는 무슬림이 아니었는데, 이전까지 신성모독죄의 주요 적용대상이 무슬림이었음을 고려해보면(Crouch 2012, 1), 이슬람화라는 종교적 흐름 속에서 신성모독이 어떻게 변용되어 활용되는가를 검토할 적절한 자료를 제공해 준다.

이 글의 목적은 인도네시아의 신성모독죄 적용에 개입된 종교적, 종교외적 요소를 밝혀보고, 최근 들어 나타난 그 적용방식과 대상의 다양화 경향을 검토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종교 자유와 종교적 관용도가 점차 축소하고 있으며, 이슬람식으로 해석된 종교 자유 개념이 종교도 간 관계를 규정하는 주요한 축으로 작동하고 있음이 주장될 것이다.

이 글의 2장에서는 아혹과 메일리아나 사건을 대상으로 신성모독죄가 적용, 강제되는 방식을 검토할 것이다. 3장에서는 인도네시아에서 신성모독죄가 성립된 배경을 추적할 것이다. 4장에서는 2000년대 이후 신성모독죄 적용 방식의 다양화를 분석할 것이다. 이 글에서 검토하는 주요 자료는 문헌 자료로서, 신성모독과 관련된 뉴스, 보고서 및 연구물이 이용될 것이다.

II. 타종교도를 대상으로 한 신성모독죄의 적용

1. 자카르따 주지사 아혹의 사례

‘아혹’이라는 애칭으로 잘 알려진 바수끼 짜하야 뿌르나마(Basuki Cahaya Purnama) 前주지사는 2012년 자카르따 주지사 선거에 당선된 조코 위도도(Joko Widodo)의 러닝메이트였다. 조코 위도도 지사가 2014년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여 당선되자 부지사인 그가 주지사 자리를 이어받았고, 재선을 노리며 2017년 선거에 출마했다. 중국계 기독교도이며 수마트라섬 리아우(Riau) 출신이라는 핸디캡에도 그는 높은 지지율을 기록하며 재선을 자신할 수 있었지만, 선거를 앞두고 신성모독 논란에 휩싸이게 되었다.

사건은 자카르따 주민을 대상으로 한 간담회에서 아혹이 쿠란의 알마이다(al Maidah) 51절을 언급한 후 논란의 여지가 있는 해석을 제시

하면서 시작되었다. 이 연설을 비디오로 접한 사람이 “알-마이다 51절을 이용하여 [여러분을] 기만해서”라는 문장 중 ‘이용하여’라는 단어를 삭제한 채 페이스북에 올렸는데, 이로 인해 “알-마이다 51절에 속아서”라는 식으로 아후크의 의도가 왜곡되어 전달되는 효과가 나타났다. 페이스북 내용이 SNS를 통해 퍼져나가자 이 사건은 곧바로 대중적 이슈로 전환했다(이지혁 2018, 95-96). 아후크의 의도가 왜곡되어 전달되었음 이후 사실로 판명되었지만 그가 이슬람을 모독했다는 비판은 수그러들지 않았다. 인도네시아 역사상 가장 많은 참가자가 모인 규탄 집회가 자카르타에서 2차례 행해졌고, 그에 대한 지지세가 담보 상태에 머물게 되었다. 1차 선거에서 그는 다른 두 명의 후보를 제치고 1위에 올랐지만 결선 투표에서 패했고 이후 신성모독죄 위반으로 구속되었다(서지원·김형준 2017, 150-151).

〈그림 1〉 아후크를 비판하는 자카르타 시위



출처: <http://indonesiaatmelbourne.unimelb.edu.au/bigger-than-ahok-explaining-jakarta-2-december-mass-rally/> (검색일: 2019.11.20.)

문제시된 아후의 연설 내용이 신성모독적 성격을 띤 것인지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 “믿는자들이여 유대인과 기독교인들을 친구로 그리고 보호자로서 택하지 말라”(최영길, 2001: 190)라는 내용이 포함된 알-마이다 51절에서 핵심 단어인 ‘아울리아(awliya[wali])’는 ‘가까운 친구’, ‘보호자’, ‘지도자’ 등 서로 다른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보수적 무슬림은 보통 ‘지도자’라는 해석을 선호했고, 무슬림이 아닌 사람을 지도자로 두어서는 안 된다는 의미 혹은 선거에서 무슬림이 아닌 후보에게 투표하지 말아야 한다는 의미로 이 구절을 확대해석했다. 이에 반대하는 무슬림은 ‘친구’나 ‘보호자’라는 의미를 강조하며, 이 구절이 매우 특수한 상황에 제한적으로만 적용되어야 함을 지적했다. 아후는 서로 다른 해석 중 하나를 수용하여 다른 편을 비판했는데, 이런 식의 논쟁 방식은 무슬림에게 있어 낯선 것이 아니었다(Black 2016; Hasan 2017, 119-120). 하지만, 주목해야 할 점은 그가 기독교도라는 사실로서, 무슬림이 아닌 사람이 쿠란의 논쟁점을 이용하여 자기 견해를 제시하는 행동이 적절하냐는 의문을 제기할 수 있도록 했다.

1970년대 후반 이후 무슬림은 이슬람식 관점을 통해 종교도간 관계를 규정하고자 노력했으며, 그 핵심은 불간섭과 국가의 통제였다. 즉, 서로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이 타종교도의 삶에 간섭하지 않아야 종교도간 화합이 가능하며 국가가 이를 뒷받침할 정책을 입안해야 한다는 것이다(김형준 1997).²⁾ 기독교 선교로 인해 무슬림의 기독교로의 대규모 개종이 진행되고 있다는 의혹에 기반을 둔 이 관점은 1980년대 이후 정부 정책에 수용되어서 선교, 종교시설 사용과 건축을 규제하는 법

2) 통제와 불간섭에 기초한 종교 자유를 극단화하여 적용할 경우, 아래의 사히비 나임(Sahibi Naim)의 주장과 같은 의견이 제기될 수 있다(1983, 38-39): 종교의 자유는 특정 종교를 가진 부모가 자기 자식들이 개종하지 못하도록 종교 생활을 돌보고 유지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 가족 구성원이 종교를 바꾸면 이는 가족생활의 기반을 불안정하게 할 것이며, 개종자가 그 가족을 떠날 가능성 역시 전혀 배제될 수 없다. 이는 상호 존중에 기반을 둔 종교 자유 및 조화의 기초가 그 가족에서 사라지게 될 상황을 초래한다.

령이 속속 제정되었다(김형준 1997, 16-18). 이러한 관점을 확대적용할 경우 무슬림이 아닌 사람이 이슬람에 대해 언급하는 행위는 불간섭의 원칙을 위반한 것이라고 규정될 수 있다.

이런 시각에서 본다면 기독교도인 아후이 쿠란을 언급했다는 사실은 그 맥락과 관계없이 기존의 관행에서 벗어난 것이다. 여기에 더해 그의 행보에 정치적 목적이 내포되어 있었다는 점은 그가 자신의 이익을 위해 종교도간 규범을 어겼다는 견해를 도출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보수 세력의 입장과 차이 나는 해석을 취해 비판을 제기했다는 사실은 그가 자신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이슬람 교리를 왜곡하여 신성모독을 했다는 비난을 가능하게 했다.

신성모독죄로 기소된 아후이의 재판 결과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요인은 보수 이슬람 단체를 대표하는 연합체인 ‘인도네시아 이슬람지도자위원회(Majelis Ulama Indonesia: 이하 MUI)’였다. 재판에 증인으로 참석한 MUI 의장 마루프 아민(Ma'ruf Amin)의 증언에 대한 보도 내용은 아래와 같았다(Tempo 2017).

마루프 아민은 ... 아후이 [대중을] 기만하기 위한 수단으로 쿠란의 알-마에다 구절을 이용했다고 말했다. 따라서 “[이는] 신성모독법 위반이다.” [마루프에 따르면] “알-마에다를 이용하여 사람들을 기만해서”라는 아후이의 언급에도 신성모독법을 위반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이 구절의 의미를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은 오직 올라마(ulama: 이슬람 학자)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MUI는 아후이 [쿠란뿐만 아니라] 이슬람 학자와 무슬림을 모독했다는 판단에 이르렀다고 그는 지적했다.

마루프 아민은 자신의 증언이 개인 의견이 아닌 MUI 산하 네 개 분과위원회의 합의에 기초한 것임을 강조했다. 이를 통해 그는 이 결정이 MUI ‘파트와(fatwa: 종교적 결정) 위원회’에서 일상적으로 발표하는 파트와보다 더욱 강력한 위상을 지니고 있음을 드러내고자 했다. 주류

이슬람 단체의 연합체로서 MUI가 지닌 종교적 정당성 그리고 인도네시아 최대의 이슬람 단체 ‘나다톨 올라마(Nahdlatul Ulama: 이하 NU)’의 의장을 역임한 마루프 아민의 위상 등을 고려할 때 그의 증언이 법원 판결을 뒷받침하는 핵심 근거로 이용되었음은 의문의 여지가 없다.³⁾

법원 판결이 MUI의 파트와에서 크게 벗어날 수 없음을 보여주는 또 다른 근거는 신성모독죄 위반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마루프 아민이 언급한 두 번째 내용으로서, 그에 따르면 쿠란의 의미를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은 오직 올라마이다. 이 지적은 두 가지 의미를 전달한다. 한편으로 이는 형법 위반의 문제일지라도 신성모독죄가 세속적 법원의 판단에만 의존할 수 없음을 시사한다. 다른 한편으로 이는 올라마가 아닌 아후의 쿠란 구절 언급 자체가 본질적으로 신성모독적 성격을 띠 수밖에 없음을 의미한다.

아후의 사례는 인도네시아에서 점점 중요시되고 있다고 거론되는 정체성 정치(identity politics)에서(서지원·전제성 2017) 신성모독죄가 효과적인 정치적 수단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신성모독의 소송들이 속에 놓이게 됨에 따라 아후에 대한 지지가 정체하고 그가 결선 투표에서 패배했음은 이슬람 세력에게 신성모독법의 효과성을 실감하도록 했다.

과거 신성모독죄의 주요 적용대상이 이단으로 간주되는 무슬림 개인이나 집단이었기 때문에 기독교도인 아후를 대상으로 한 사건은 이례적이라 평가될 수 있다. 무슬림의 공세에 대해 기독교도가 소극적으로 대응함으로써 교리를 중심으로 한 집단 갈등이 최소화되어 왔음을 고려해보면, 아후에 의해 촉발된 면이 있을지라도 이 사건은 정치적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슬람 세력이 신성모독법을 활용했다는 해석을 뒷받침해 준다.

3) 신성모독 재판에서 MUI의 파트와가 판결의 핵심 근거로 이용된 다른 사례에 대해서는 크라우치(Crouch 2017, 250-253)를 참조할 것.

2. 수마트라의 메일리아나 사례

아혹 사건이 종결되고 얼마 되지 않아, 무슬림이 아닌 종교도를 대상으로 한 또 다른 신성모독죄 재판이 공론화되었다. 이 사건은 아혹의 경우와 다른 맥락에서 발생했고 사건의 주인공 역시 일반인이었다. 사건은 북부 수마트라주 판중 발레이(Tanjung Balai)市에서 발생했다. 중국계 불교도인 메일리아나가 집 앞 모스크에서 마이크를 통해 들려오는 기도를 알리는 소리(adzan: 아잔)가 너무 시끄럽다는 불평을 이웃에게 털어놓으면서 사건이 시작되었다. 이 소식을 듣고 그녀를 방문한 모스크 관계자에게 그녀는 불평불만을 늘어놓았고, 이와 관련된 소문이 SNS를 통해 확산되자 분개한 무슬림 군중이 그녀의 집으로 몰려왔다. 그곳에서 그녀를 찾지 못한 이들은 동네의 절과 차량을 파괴하고 방화했으며, 다음 날 아침까지 폭력사태를 이어갔다. 사건이 종결되고 한동안이 지난 후 지역의 이슬람 단체는 그녀를 신성모독죄로 기소할 것을 경찰에 강력하게 요구했고, 재판에 넘겨진 그녀에게 법원은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Monza 2018).

〈그림 2〉 메일리아나에 분노한 무슬림 군중이 파괴한 절과 차량



출처: <https://nasional.tempo.co/read/1119663/ini-kronologi-kasus-penistaan-agama-meiliana-di-tanjung-balai>; <https://beritagar.id/artikel/berita/mengapa-amuk-massa-terjadi-di-tanjung-balai> (검색일: 2019.12.10.)

메일리아나에 대한 수사를 요구하면서 북부 수마트라주 MUI는 자신의 집을 방문한 모스크 관계자에 대한 그녀의 거친 태도를 문제 삼았다. 집게손가락을 모스크 관계자의 얼굴에 댄 채 그녀는 아잔 소리가 “귀를 먹게 할 정도로 커서 귀가 아프다. 매일매일 시끄럽고, 아침에 시끄럽고, 오전에 시끄럽고, 저녁에 시끄러워서 편안할 날이 없다”고 소리쳤다는 것이다(MUI 2017). 이러한 언행에 대해 MUI는 아래와 같은 내용을 포함한 파트와를 제시했다(MUI 2017).

- 메일리아나씨와 모스크 관계자 사이의 … 대화가 녹음된 자료는 그녀가 기도 시간을 알려야 한다는 이슬람의 가르침에 대해 관용적이지 못한 태도를 보였음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 그녀의 … 말과 표현은 이슬람법에 대한 멸시, 모독, 비하이다.
- 메일리아나씨의 태도는 … 신성모독에 대한 형법 156a조에 제시된 범죄 요건을 충족한다.

MUI는 파트와에서 두 가지 측면을 부각했다. 첫째, 메일리아나의 항의 대상인 아잔 소리가 종교적 의무로서, 그에 대한 불만의 표현은 타종교에 대한 관용의 부족을 의미한다. 둘째, 불만을 표현하는 그녀의 거친 언행은 이슬람에 대한 멸시와 모독을 내포한다. MUI는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그녀의 태도를 신성모독죄로 판단했는데, 주목할 점은 이 두 측면이 서로 연결된 듯하지만 분리될 수 있다는 점이다. 즉 이슬람 활동에 대한 품위 있는 항의 표현이 신성모독죄로 규정될 수 있을지의 문제가 명확하게 제시되어 있지 않다. 이는 신성모독죄 적용이 자의적인 성격을 띠 수밖에 없음을 의미한다. 동일한 내용의 불만이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제기되었는가에 따라 상이한 판단을 결과할 수 있다.

메일리아나를 비판한 MUI 파트와에는 종교 외적 요인이 거론되어 있지 않다. 하지만, 그녀에 대한 불만이 순식간에 대규모 균중을 끌어

모아 폭동을 결과했다는 사실은 종교외적 요인이 이 사건에 개입되어 있음을 추정하도록 한다. 폭동을 통한 불만 표출 후 사건이 종결되지 않고 신성모독죄 기소에 대한 요구로 이어졌다는 사실 역시 이 사건을 감정적으로 격앙된 군중에 의해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간주하기에 무리가 있음을 보여준다.

메일리아나 사건의 전개 과정을 검토한 연구에서는 종교 외적 요인이 폭동을 추동한 요인으로 거론되었다. 이 지역에 살던 토착인과 중국계 주민 사이의 사회문화적 갈등, 두 집단 사이의 의사소통 부재, 경제적 차이, 정치적 대립 등이 비종교적 요인으로 거론되었다. 물야르또노 외(Mulyartono et al. 2018)는 폭동 발생 이전 불교도와 무슬림이 높은 긴장 관계에 놓여 있었음에 주목하면서 경제적 활동을 주도하는 불교도에 대한 불만이 이 사건을 통해 표출되었다고 설명한다. 수리아디나타(Suryadinata)는 이 지역 향만 폐쇄에 따른 높은 실업률과 경제적 불평등을 폭동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했다(2019, 4). 이러한 연구를 고려한다면, 메일리아나 사건은 정치경제적, 사회문화적 불만과 같은 지역 사회의 다이내믹스가 신성모독을 매개로 하여 표출된 것이라 해석될 수 있다.

비종교적 요인의 중요성과 함께 메일리아나 사건이 가진 종교적 의미 역시 중시되어야 한다. 아혹과 마찬가지로 메일리아나는 무슬림이 아니어서, 그녀에 대한 신성모독죄 적용은 종교도간 관계에 새로운 차원이 첨가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즉, 타종교도의 행동을 통제할 수단으로 신성모독죄가 부상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것이다. 특히 메일리아나 사건은 아잔에 대한 항의라는 일상적인 언행조차도 문제시될 수 있음을 관련자 모두에게 환기해 주었다. 아혹에 대한 MUI 파트와에 제시된 것처럼 무슬림이 아닌 종교도가 이슬람과 관련된 어떤 것에 대해 말하거나 행동해도 신성모독의 굴레를 씌울 수 있다는 가능성이 더욱 명확하게 인식될 수 있었다.

Ⅲ. 신성모독법의 제정

인도네시아에서 최근 전면 개정을 앞둔 형법은 네덜란드 식민지 형법에 바탕을 두고 있으며, 일부 조항의 개정과 신설이 필요에 따라 선별적으로 이루어졌을 뿐이다.⁴⁾ 식민지 형법에는 신성모독과 직접 관련된 내용이 없으며, 공공질서를 위반하는 범죄에 대한 처벌 조항에 간접적으로만 언급되어 있다. 식민지 형법 156조는 “적대감, 혐오감 혹은 모욕감을 의도적으로 불러일으키는 사람”에게 4년 이하의 징역형과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Hekmeijer 1918, 49). 이 조항은 인도네시아 형법 156조로 전환되었는데, 이 과정에서 ‘의도적’이라는 표현이 삭제되고 적대감, 혐오감 혹은 모욕감의 대상이 “인종, 출신국가, 종교, 출신지, 혈통, 국적 혹은 국가법에 따른 지위”에 있어 차이 나는 집단으로 구체화되어 적시되었다.

형법 156조에 종교적 차이가 제시되어 있기에, 신성모독죄는 이 조항에 추가되었다. 신성모독죄의 형법 삽입은 수까르노(Sukarno)가 공포한 대통령령에 의거하는데, 1965년 초 발표된 대통령령 1조는 아래와 같았다.⁵⁾

인도네시아에서 신봉되는 종교와 유사한 활동을 하거나 이러한 종교에 대해 해석하는 과정에서 누구도 이러한 종교의 근본 교리에서 벗어난 활동과 해석을 공적인 장소에서 의도적으로 말하고 제안하거나 그에 대한 대중의 지지를 얻고자 해서는 안 된다.

4) 인도네시아 형법을 인터넷상에서 쉽게 구할 수 있기에 본문에서는 따로 인용 표시되지 않는다. 이 글에서 이용하는 형법은 아래 사이트에 제시되어 있다. <http://kejarisanggau.go.id/wp-content/uploads/2015/10/KUHPidana.pdf> (검색일: 2019.11.10.)

5) 대통령령은 인도네시아어로 *Penetapan Presiden Republik Indonesia Nomor 1/PNPS Tahun 1965 tentang Pencegahan Penyalahgunaan dan/atau Penodaan Agama*이다.

대통령령 발표 시점이 수까르노 정권 말기라는 사실은 그 제정에 정치적 고려가 개입되어 있음을 추정하게 한다. 이를 뒷받침할 근거는 대통령령 2조 2항으로서, 종교 단체나 ‘전통종교 집단(aliran kepercayaan)’이 1조를 위반할 경우 대통령이 그 단체를 금지하거나 해산할 수 있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다.

전통종교 집단은 이슬람을 포함한 다양한 종교 전통에 기반하여 신비주의적 믿음을 강조하는 집단으로서 광범위한 대중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다. 독립 후 이 집단은 공인 종교 중 하나의 지위를 얻고자 했고 공산당에 친화적인 행보를 취함으로써 이슬람 세력으로부터 강한 견제를 받았다(Subagyو 1973). 정권 후반기 공산당의 점증하는 영향력을 경계하던 수까르노는 이슬람 세력을 지렛대로 삼아 정치적 균형을 유지하려는 행보를 펼쳤는데, 이슬람 세력에 대한 양보의 일환으로 대통령령을 공포하게 되었다.

대통령령 1조의 취지에 맞추어 대통령령 4조는 형법 156조에 신성모독 관련 조항을 삽입하도록 했다. 형법 156a조로 새로이 삽입된 조항은 아래와 같다.

- 156a. 공적인 장소에서 의도적으로 아래의 감정을 표출하고 아래의 행동을 한 사람을 최고 5년의 징역형에 처한다.
- a. 인도네시아에서 신봉되는 종교에 대해 전적으로 적대감, 오용, 모독의 성격을 띤 [감정이나 행동]
 - b. 유일신에 대한 믿음에 기반을 둔 종교를 믿지 않게 하려는 의도를 가진 [감정이나 행동]

156조와 비교할 때 156a조는 신성모독죄가 무엇인가를 구체적으로 적시하고 있다. 종교에 대한 적대적이고 모욕적인, 그리고 원래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게 종교를 잘못 사용하는 태도와 행위가 처벌 대상으로

규정되었다. 신성모독적 태도와 행위를 형법에 추가했음에도 이 조항에는 그 남용 가능성에 대한 경계심이 드러나 있다. 156a조 a항의 ‘전적으로(pada pokoknya, semata-mata)’라는 표현이 이를 예시한다. 이 법안에 대한 상세 설명에 따르면, 모욕감이나 적대감의 표출이 핵심적 의도일 경우에만 이 조항이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에 바탕을 두고 학문적으로 이루어진 언행은 이 법의 적용대상이 아니다. 명확한 의도를 가지고 전적으로 종교를 모욕하거나 그에 대한 적대감을 표현했다는 사실이 인정될 때에만 이 조항에 따른 처벌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신성모독죄 적용에 있어서의 문제점이 강조된 이유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당시의 정치 종교적 상황이 고려되어야 한다. 무엇보다 신성모독죄를 지지하는 이슬람 세력의 정치적 영향력이 강하지 않았다. 또한 수카르노의 자유주의적 종교관(김형준 1997, 8-10)이 예시하는 것처럼, 종교 자유와 관용이 일반인에게 중시되어서(Anderson 1965), 신성모독이라는 잣대의 적용에 대한 제약으로 작용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156a조의 활용은 극도로 제한되었고, 1965-69년 사이 매년 한두 건의 기소만이 이루어졌을 뿐이다(Garnesia 2018).⁶⁾

수카르노에 이어 정권을 잡은 수하르토(Suharto)의 입지가 강화된 1970년대에 접어들어 신성모독죄는 정치적 목표를 위해 활용되었다. 그는 전통종교 집단의 억압이라는 대통령령의 취지를 심분 활용해서 6개의 전통종교 집단을 신성모독법 위반이라는 명분으로 금지시켰다(Silalahi 2010, 23). 이처럼 정치적 목적이 신성모독죄 적용에 개입됨으로써 1980년대에 접어들어 이 법은 적극적으로 활용되지 않았다. 수

6) 이 기간 동안 신성모독죄 기소로 대중적 관심을 끈 유일한 사례는 끼판지꾸스민(Ki Pandjikusmin)이라는 필명의 작가가 문학잡지에 게재한 단편소설 ‘점점 더 흐려지는 하늘(Langit Makin Mendung)’이었다. 알라, 무함마드, 가브리엘을 주인공으로 하는 이 소설이 출판된 후 잡지사에 대한 무슬림의 항의가 집단적으로 이루어졌으며, 이후 소설을 기고한 작가는 형법 165a조 위반으로 1년 형을 선고받았다(Deakin 1976, 85-86).

하르포의 통치가 공고해짐에 따라 소규모 종교집단에 대한 직접적 억압의 필요성이 낮아졌기 때문이었다. 또한, 정치적 활동이 엄격하게 통제되는 상황에서 신성모독죄 적용을 요구할만한 이슬람 세력의 대중적 힘 역시 제대로 작동할 수 없었다.

IV. 신성모독법의 확대 적용: 1990년대 이후

사문화된 것처럼 보이던 신성모독법은 1990년대 들어 화려하게 부활했다.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1980년대 후반 이후 전개된 두 가지 변화를 고려해야 한다. 첫 번째는 1970년대부터 시작된 이슬람화(Islamization)의 영향력이 강화되면서 종교적 의무를 수행하는 무슬림이 증가했다는 점이다. 다른 하나는 이슬람에 대한 정부의 태도 변화로서 후계 문제를 고민하던 수하르포는 탄압 대상이던 이슬람 세력을 회유하려는 방향으로 정책을 선회했다(Schwarz 1994, 174-184).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신성모독법이 부상했고, 1990년대에 발생한 두 사건은 이 법이 어떤 방식으로 적용될 수 있는지를 예시했다.

첫 번째 사건은 1990년 잡지사 모니터(Monitor)를 대상으로 발생했다. 모니터 잡지는 가장 존경하는 사람이 누구인가를 묻는 앙케트를 진행했고, 선지자 무함마드가 11위에, 모니터 편집장이 10위에 오른 결과를 가감 없이 보도했다. 이에 분노한 무슬림들이 집단 시위를 결행했고 주요 이슬람 단체 역시 문제를 제기했다. 대중의 집단적 대응이 정치 활성화로 이어질 것을 두려워한 정부는 서둘러 잡지사를 폐간하고 편집장을 신성모독죄로 기소했다. 이후 재판에서 편집장은 유죄를 선고받았다(김형준 2001, 173-176).

이 사례는 신성모독죄 사건이 전개되는 주요한 유형을 보여주었다.

이슬람과 관련되어 주류 이슬람 세력의 공분을 살만한 상황이 발생하고 그에 대한 집단적 비판과 행동이 격화되면 정부가 신성모독법 적용을 통해 그 불만을 해소하면서 사건이 일단락된다.

신성모독죄 적용 방식을 보여주는 두 번째 유형은 메일리아나 사건처럼 지역적 상황과 긴밀하게 연관되었다. 이를 예시할 사건은 동부 자바 시투본도(Situbondo)에서 모스크를 관리하던 살레(Saleh)에 대한 신성모독죄 적용이었다. 그는 자신의 이웃이자 친척으로 빼산뜨렌(pesantren: 사설 이슬람 교육 기관)을 운영하는 자이니(Zaini)에게 알라가 보통의 존재일 뿐이며 그 지역에서 최근에 사망한 종교지도자가 제대로 된 죽음을 맞이하지 못했다고 이야기했다. 여기에 분개한 자이니는 살레의 말을 주변에 퍼뜨림과 동시에 이슬람 단체 NU 지부에 이 문제에 대한 의견을 요청했다.

NU는 이 사건이 엄중하지 않은 문제를 대상으로 하기에 신성모독죄 적용이 불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굴하지 않은 자이니가 살레를 직접 고발하고 그에 대한 재판이 진행되었는데, 마지막 공판에서 참극이 발생했다. 재판을 참관하던 수천 명의 무슬림들은 살레에게 선고된 5년형에 만족하지 못했다. 이들은 살레의 사형을 요구하면서 불만 대상이던 주변 기독교 시설에 대한 공격을 감행했다. 수십 개의 교회와 성당이 불타고 수십 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후에야 폭동은 잠잠해질 수 있었다(Mudzakkir 2010, 122-12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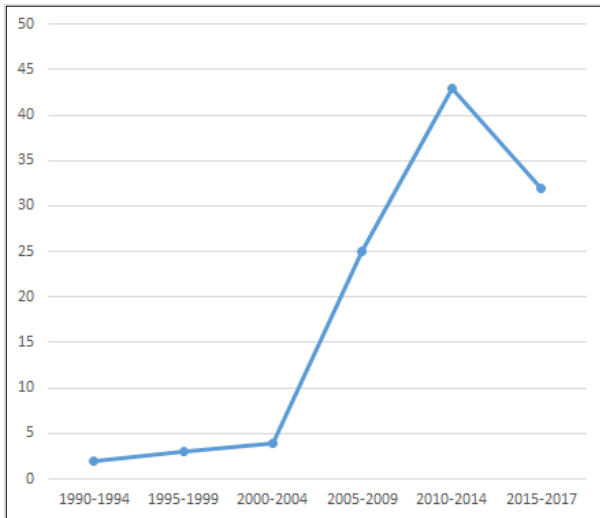
이 사건의 전개 과정에서 핵심 요인은 자이니라는 인물의 개인적 이해관계였다. 살레에 대해 그가 가지고 있던 악감정은 사건의 촉발 요인이었다. 자신의 의견을 NU 지부가 수용하지 않자 그는 대중을 동원하여 자신의 영향력을 과시하려고 했고, 이를 신성모독죄 고소와 재판을 통해 표현했다.

신성모독 사건에서 나타나는 공통점은 무슬림 대중의 집합적 대응

이다. 대중의 집합 행동이 계속되면 경찰과 검찰은 기소를 통해 이를 해결하고자 했으며, 집합적 압력이 작용하는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재판은 공정하게 진행될 수 없었다. 이와 함께 고려해야 할 점은 종교 외적 요인의 중요성이다. 살레 사건에서처럼 종교는 촉발 요인으로 기능하며 종교 외적 요인이 신성모독과 관련된 집합 행동을 가속할 원동력으로 작용했다.

2000년대에 접어들어 신성모독죄의 적용 사례는 급격히 증가하는 추이를 보였다. 아래는 신성모독죄로 기소된 재판을 1990년 이후 5년 단위로 정리한 자료이다.

〈그림 3〉 신성모독 재판 건수(1990-2017)



출처: Garnesia(2018)

2004년까지 매년 한 건 이내로 발생하던 신성모독 사건은 2005-2009년 사이 25건으로 증가한 후, 2010년대 들어 급증세를 이어나갔다. 사건 대다수는 자바와 수마트라를 중심으로 한 무슬림 밀집지역에서 발생했

고 기소된 사람의 대다수는 무슬림이었다. 국제 앰네스티(Amnesty International) 보고서(2014, 35-43)에 제시된 39건의 사례에서도 동일한 경향을 찾을 수 있다. 2005년에서 2014년까지 발생한 39건의 신성모독 사건 중 20건이 자바에서, 6건이 수마트라에서 일어났다. 39건의 사건 중 기독교도가 연루된 경우는 5건이며, 이 중 3건은 기독교도 사이에서, 2건은 무슬림과 기독교도 사이에서 벌어졌다.

신성모독 사건의 증가는 2000년대 이후 인도네시아 사회에서 강화되어 온 이슬람에 호의적인 사회 분위기와 연관된다. 종교적 의무를 실천하려는 무슬림 대중의 꾸준한 증가, 정치를 포함한 공적 영역에서 전개된 이슬람 관련 활동의 활성화, 이슬람 세력의 요구에 대한 정부의 유화적 대응 등은 인도네시아 이슬람의 주류를 구성하는 보수적 무슬림의 목소리가 더욱 뚜렷하게 제기되고 대중적 호응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러한 보수화 흐름(Bruinessen 2013)은 신성모독에 대한 민감도를 증폭시켰고 이는 신성모독 관련 사건을 증가시켰다.

신성모독 사건의 구체적 전개 과정을 살펴보면, 대다수 사건이 개인이 아닌 집단적 요구에 의해 추동되었으며, 집단적 힘이 기소뿐만 아니라 재판 과정에도 작용했음을 알 수 있다. NU 지도자 루마디 마흐마드(Rumadi Ahmad)는 집단의 중요성을 아래와 같이 설명했다(Tribun Jateng 2016).

인도네시아에서 신성모독 사건에는 하나의 유형이 존재한다. 대중이 간여되지 않은 사례는 거의 없다. 사건은 항상 집단에 의한 시위와 대중 동원으로 시작되며, 집단행동의 영향 하에 법집행 기관이 기소를 결정하고 법원 판결을 한다. 대중으로부터의 압력이 강할수록 형량이 증가하는 경향 역시 존재한다. 대중적 압력[의 크기]은 기소된 사람이 교도소에 몇 년 있어야 하는가를 의미한다.

2000년대 이후 이슬람 단체, 특히 급진주의적 성향의 이슬람 단체의 활성화는 신성모독 사건을 증가시킨 주요 요인이었다. 이를 대표하는 단체는 1998년 설립된 ‘이슬람수호자전선’(Front Pembela Islam: FPI)으로, FPI는 매춘, 도박, 마약과 같이 이슬람에서 금기하는 부도덕한 행동에 대한 자경주의적 위협과 공격으로 유명세를 치렀다. 이후 FPI의 활동 대상은 이슬람과 관련된 모든 영역으로 확대되었고, 이들은 집단 시위를 통해 자신들의 요구를 강제하려 했다. 이들의 주요 공격 대상 중 하나는 보수 이슬람에 의해 이단으로 간주된 소규모 종교집단이었다. 이들은 잘못된 이슬람 교리를 신봉하여 이슬람을 모독하고 무슬림을 현혹한다는 명분으로 아흐마디아와 시아 추종자의 거주지를 공격하고 이들을 다른 지역으로 쫓아버리기까지 했다(Irawan 2017, 168-171).⁷⁾

지역 수준에서 발생한 신성모독 사건의 전개 과정을 살펴보면 급진주의 단체와 지역 MUI가 직접적으로 조율되지 않은 공조 관계를 통해 역할 분담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Telle 2017, 380-384). 신성모독 관련 문제가 제기되면, 급진주의 집단은 시위를 통해 이를 공론화하고 경찰의 개입을 압박하며, 지역 MUI는 관련 파트와를 제시한다. 이러한 과정은 2005년 동부 자바에서 전개된 신성모독 사건을 통해 예시될 수 있다(Hidayatullah 2005; Sihombing et al. 2012, 30-32).

동부자바에 살던 유스만(Yusman)은 메카로의 순례 도중 아랍어가 아니라 인도네시아어로 예배를 드리라는 계시를 신으로부터 받게 된다. 귀국 후 그는 이 계시를 실천하기 위해 자신의 주장을 담은 인쇄물과 영상

7) 아흐마디아와 시아가 오랫동안 비판받아온 집단이라는 이유로 인해 주요 이슬람 단체가 FPI를 비롯한 급진주의 단체의 공세에 대해 침묵하자 정부가 적극적인 행보를 펼쳤다. 1965년 대통령령 2조 1항에 따라 종교부와 내무부, 검찰청 명의로 아흐마디아의 교리 확산을 금지하는 훈령이 2008년 발표되었다. 대통령령 2조 2항이 적용된 것은 아니어서, 아흐마디아 집단의 자체적 활동이 금지되지는 않았다(Detiknews 2008; Hasan 2017, 114-115).

자료를 만들어 배포했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말랑(Malang)道 MUI는 유스만 로이의 해석이 이단이라는 파트와를 내리고 활동중지를 요구했지만 거절당했다. 이 사건이 미디어를 통해 알려지자 FPI를 포함한 몇몇 급진주의 단체가 유스만을 찾아가 대규모 시위를 벌였고, 신성모독죄로 그를 기소할 것을 경찰에 요구했다. 계속된 집단행동으로 인해 긴장이 고조되자 경찰은 유스만을 형법 156a조 위반 혐의로 체포했다. 이후 그는 유죄판결을 받았는데, 재판 과정을 참관한 이슬람 단체 회원은 판결에 감사하며 집단적으로 감사예배를 행했다.

유스만 사건은 지역 MUI와 FPI를 포함한 급진주의 집단 사이의 공조에 의해 추동되었다. 사건이 공론화된 후 MUI는 신성모독을 뒷받침할 파트와를 제시했고 급진주의 집단은 경찰을 압박함과 동시에 법정에서 집단적으로 참여하여 법원 판결에 영향을 미치고자 했다. 직접적으로 조율되지 않았음에도 두 집단 사이의 공조가 가능했던 이유에 대해 두 가지 점을 거론할 수 있다. 첫째, 이들 모두 경전중심적(scriptural) 해석을 중시했다. 양자의 차이는 불만 표현에 있어 물리력의 이용 여부로서 급진주의 집단은 시위와 소규모 테러를 거리낌 없이 사용했지만, MUI는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다. 둘째, 이들 사이에 일정 정도의 인적 교류가 나타나서 급진주의 집단의 지도자 중 일부가 MUI 회원으로도 활동했다. 이러한 이유로 신성모독 사건에 대해 이슬람 단체 간 협업이 가능했는데, 이는 앞에서 살펴본 메일리아나 사례에도 적용되었다.

급진주의 단체의 주요 관심사로 신성모독죄가 편입됨에 따라 관련 사건의 전개 양상에도 변화가 나타났다. 가장 두드러진 측면은 법 위반으로 지목되는 행동과 대상의 다양화로서, 이전까지 고려되지 않던 문제가 법 적용대상에 포함되는 경우가 증가했다.

국제 엠네스티 보고서에는 2005~2014년 사이 발생한 39건의 신성모독 사건이 제시되어 있다(2014, 35-43). 이 사건은 크게 5가지 범주로 분류될 수 있다. 첫 번째는 이단적 성격을 띠다고 간주되는 이슬람

집단을 대상으로 한 신성모독 사건이다. 이단적 집단은 1965년 대통령령에도 포함되어 있을 정도로 주류 이슬람 세력이 오랫동안 문제시했던 대상으로서, 2000년대 이전에도 MUI는 특정 이슬람 집단을 이단으로 규정하는 파트와를 발표했다. 2000년대 이후 MUI의 파트와는 급진주의 집단의 집단행동으로 인해 더욱 쉽게 강제될 수 있었다.⁸⁾ 두 번째 대상은 출판물에 담겨 있는 논쟁적인 이슬람 교리 해석으로 이 경우 역시 주류 이슬람 세력이 지속적으로 문제 삼았던 것이다.

세 번째는 주류의 종교 해석이나 행동에서 벗어난 개인적 수준의 ‘일탈’을 대상으로 한다. 휘파람을 불면서 예배를 해야 한다거나 인도네시아어로 예배를 해야 한다는 주장, 알라의 계시를 들었다거나 자신이 선지자라고 주장하는 개인에게 신성모독죄 위반 혐의가 씌워졌다. 네 번째 범주 역시 신성모독죄 위반 대상은 개인인데, 공적 공간에서 이슬람에 대한 부정적 시각을 유발적으로 표출한 경우였다. 모스크에 낙서를 하거나 수업 시간에 이슬람에 대해 부정적 견해를 피력한 사람에 대한 신성모독죄 기소가 이 범주에 해당한다. 앞의 살레 사건에서 지적되었듯이 개인을 대상으로 한 신성모독죄 고발은 지역수준에서의 갈등의 결과였다. 따라서 신성모독죄가 부상하기 이전까지 이러한 언행은 개인의 실수로 치부되어 법적 처리 대상으로 여겨지지 않았다. 신성모독죄 적용 관련 정보의 확산과 급진주의 집단의 활성화는 이전까지 심각하게 고려되지 않던 문제를 법적인 영역으로 끌어들이는 효과를 가져왔다.

마지막 범주는 네 번째와 유사성을 갖지만 인터넷상에서의 표현이 문제시된다는 점에서 차이를 보인다. 블로그나 페이스북에 게시된 이

8) 2000년대 이전 MUI에서는 아흐마디아(1980년), al Quran Suci(1983년), 시아(1984년), Islam Jamaah(1994년), LDII(1994년) Lia Eden(1997년) 등을 이단으로 규정한 파트와를 발표했다. 이러한 파트와 말미에는 이단 집단의 비 합법화와 처벌을 요구하는 내용이 부가되었지만, 이런 요구가 정부기관에 의해 받아들여진 경우는 드물었다.

슬람 관련 내용이 문제시되어 공론화되면 그에 대한 집합적 대응이 시작되고 법적 처벌이 요구되었다. 2012년에 발생한 사건은 아래와 같이 전개되었다(Amnesty International 2014, 22-23; Mahkamah Konstitusi 2012).

FPI는 페이스북에 게시된 세바스티안 조(Sebastian Joe)의 글을 문제 삼아 경찰에 법적 처벌을 요구했다. 그는 아담과 하와(Hawa: 기독교의 이브)가 세탄의 유혹에 빠져 천국에서 쫓겨났다는 교리 내용을 거론한 후 세탄이 지옥에 살았기 때문에 이들이 천국에 있던 아담과 하와에게 속삭이듯 말하기가 불가능했다고 적었다. 글의 말미에 덧붙여진 ‘hehehehe’라는 표현은 그가 자신의 견해를 심각하게 여기고 있지 않음을 드러냈지만, 이러한 표현 역시 FPI에게 있어서는 용납될 수 없었다. 그를 고소했음에도 경찰이 뚜렷한 반응을 보이지 않자, 20여 명에 이르는 FPI 회원이 세바스티안 조를 방문하여 그를 집에 가둔 후 경찰의 개입을 요구했다. 경찰서로 인계된 그는 이후 신성모독죄로 기소되어 5년형을 선고받았다.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FPI는 그의 부인에게 이슬람에 대한 믿음을 모스크에서 증명하도록 강제함으로써 집합적 힘이 작동하고 있음을 드러냈다.⁹⁾

세바스티안 조는 기존의 종교해석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글을 게시하지 않았다. 문제시된 글은 가까운 사람끼리 일상에서 농담조로 이야기될 수 있을 만한 내용이었지만, 의사소통의 맥락이 고려될 수 없는 페이스북에 게시되었다는 이유로 종교 교리를 희화화한다는 혐의가 씌워질 수 있었다. 그가 이슬람을 본격적으로 배웠거나 가르친 경험을 갖지 않았다는 사실은 불특정 다수의 무슬림에게 신성모독죄가 적용

9) 2008년 신설된 ‘정보 및 전자거래법(UU Informasi dan Transaksi Elektronik)’ 28조 2항에는 종족, 종교, 인종, 집단 간 차이에 기반하여 혐오감과 적대감을 불러일으키는 정보의 유통을 금지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었고, 이 조항이 형법의 신성모독죄와 함께 적용되었다.

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신성모독죄의 적용 확산은 이전까지 고려되지 않던 언행이 종교모독이라는 잣대로 평가될 수 있음을 확인시켰다. 가까운 사람들 사이에서 농담처럼 말해지는 이야기, 페이스북에 일기처럼 올려놓은 엉뚱한 생각, 일상에서 우발적으로 이루어진 행동이 이슬람과 연관되고 그것이 우연한 계기를 통해 공론화될 때 신성모독법의 처벌 대상으로 편입될 수 있다는 것이다.

신성모독죄가 다양한 방식으로 다양한 맥락에서 적용되는 양상, ‘고무 법안(pasal karet)’이라 불릴 정도로(Sihombing et al. 2012, 4) 누구에게나 적용될 수 있는 신성모독법의 확장성, 집단적 힘을 과시할 수단으로 신성모독죄가 활용될 수 있다는 인식의 확산 등과 같은 최근의 상황은 아후과 메일리아나를 대상으로 한 신성모독법 적용을 가능하게 만든 배경으로 작동했다.

아후과 메일리아나의 종교적 정체성은 대다수 신성모독 사건이 무슬림을 대상으로 했던 이전과 차이를 보였다. 이는 신성모독법이 종교도간 관계에 미칠 영향을 추정할 수 있도록 한다. 한편으로 이들에 대한 신성모독죄 적용은 타종교도로 하여금 자기 검열의 필요성과 강제성을 느끼도록 했다. 다른 한편으로 아후과 메일리아나 사건은 타종교도를 통제할 수단으로 신성모독죄가 활용될 수 있음을 무슬림들이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했다. 이러한 변화는 종교 자유의 공간이 인도네시아에서 축소되고 있음을 지적한다. 이슬람 관련 활동을 대상으로 한 타종교도의 언행 모두가 신성모독죄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는 사실은 이슬람식 종교 자유의 개념을 타종교도에게 강제할 기반을 이슬람 세력이 더욱 공고하게 확보했음을 시사한다.

V. 결론

조코위 대통령의 두 번째 임기 시작을 앞둔 2019년 9월, 대학생이 주도한 대규모 시위가 자카르타에서 벌어졌다. 1998년 수하르토 퇴진 이후 대학생을 중심으로 한 본격적인 시위가 발생하지 않았었기에 이 사건은 커다란 대중적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시위의 주요 원인으로서는 반부패위원회의 독립성과 권한 약화를 내용으로 하는 법 개정, 그리고 국회 표결을 앞둔 형법 개정안이 지목되었다. 학생들은 이 법안이 권위주의의 강화와 민주주의의 퇴행을 의미한다고 주장했다(Haryanto 2019).

형법 개정은 지난 10여 년에 걸쳐 논의되어 온 것으로, 네덜란드 형법을 준용한 현행 형법의 식민지성을 타파하려는 목적을 지녔다. 형법 개정안 중 신성모독죄는 시위대와 언론의 주목을 받지 않았지만 중요한 변화를 포함하고 있었다. 현행 형법에서 156a조를 통해서만 강제되던 신성모독죄는 개정안에서 6개 조항으로 확대되었다. 예배, 예배 지도자, 예배 장소 등을 대상으로 한 신성모독적 언행이 구체적으로 적시됨으로써 범조항을 확대할 수 있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전의 포괄적 조항이 제거된 것은 아니었다. 결과적으로 형법 개정안은 신성모독죄가 과거 형법에서와 같이 추가적으로 삽입된 조항이 아니라 형법으로 다스려야 할 정당한 대상임을 각인시키는 효과를 지녔다.

신성모독죄 관련 형법 조항의 확대는 이슬람 세력이 줄기차게 요구한 것으로 여기에는 종교도간 관계를 이슬람식으로 규정하려는 욕구가 담겨 있다. 독립 이후 이슬람 세력은 종교도간 관계가 국가에 의해 적절하게 통제될 때에만 종교도간 화합을 실현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Menchik 2014, 614-615; Naim 1983). 이들의 노력은 1970년대 중반 이래 일정한 성과를 가져와서 종교 교육, 선교, 종교시설 건축 등을 제한하는 규정이 입안되었다(김형준 1997, 16-7; Ropi 2007).

2000년대 이후 나타난 신성모독죄의 확대적용은 이슬람 세력에게 이 법의 실효성을 실감하도록 했다. 이것이 상이한 이슬람 해석을 지지하는 집단이나 개인에 대한 효과적인 제재 수단으로 작동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아후와 메일리아나와 같은 타종교도에게까지 적용될 수 있다는 사실은 이 법이 종교도간 관계를 효율적으로 통제하는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사건이 언론의 주목을 받음으로써 무슬림과 관련된 모든 상황에 대해 신성모독이라는 잣대가 적용될 수 있음을 타종교도가 인식하게 되었고 이는 자기검열 및 규율적 상황을 강화했다.

무슬림뿐만 아니라 타종교도에 대해서도 적용되는 신성모독법은 종교 자유를 축소시키고 종교 문제에 있어서의 관용도를 감소시켰다. 이슬람 중심적 시각이 종교 자유와 종교도간 관계를 규정하는 핵심적 틀로 이해되는 최근의 상황은 인도네시아 종교의 특징으로 종교적 관용이 거론되던 과거(Anderson 1965; Magnis-Suseno 1984; Mulder 1992)와 대비되면서, 이슬람화가 인도네시아 사회에 미친 장기적인 영향을 실감하도록 한다.

투 고 일: 2020년 1월 15일
심 사 완 료 일: 2020년 2월 16일
계 재 확 정 일: 2020년 2월 16일

참고문헌

- 김형준. 1997. “종교 자유에 대한 변화하는 해석: 인도네시아의 사례.” 『동남아시아연구』5: 3-23.
- _____. 2001. “인도네시아의 변화하는 이슬람과 국가.” 김영수 외. 『동남

- 아의 종교와 사회』. 서울: 오름.
- _____. 2013. “이슬람 부흥의 전개와 영향: 인도네시아의 사례.” 『동남아시아연구』23(3): 181-215.
- 서지원·김형준. 2018. “인도네시아 2017: 뺏짜실라의 귀환과 대선 국면의 도래.” 『동남아시아연구』28(2): 147-197.
- 서지원·전제성. 2017. “인도네시아 2016: 조코위의 기반 다지기와 ‘정체성의 정치’의 도전.” 『동남아시아연구』27(2): 213-243.
- 이지혁. 2018. “세 가지 화두로 살펴본 2017년 자카르타 주지사 선거: 신성모독, 탈-진실, 정체성 정치.” 『아시아리뷰』7(2): 87-118.
- 이충상. 2010. “종교적 비판의 자유: 대법원 2010. 9. 9. 선고 2008다84236 판결을 중심으로.” 『법조』60(6): 237-282.
- 최영길. 2011. 『성 꾸란: 의미의 한국어 번역』. 파히드 국왕 꾸란 출판청.
- 최영철. 2017. “중동 무슬림 국가의 형법과 종교 자유권.” 『한국중동학회 논총』38(2): 121-157.
- Amnesty International. 2016. *As Good As Dead: The Impact of the Blasphemy Laws in Pakistan*. London: Amnesty International.
- _____. 2014. *Mengadili Keyakinan: Undang-Undang Penodaan Agama Indonesia*. London: Amnesty International.
- Anderson, Benedict. 1965. *Mythology and the Tolerance of the Javanese*. Ithaca: Modern Indonesia Project, Cornell University.
- Bruinessen, van Martin. 2013. *Contemporary Developments in Indonesian Islam: Explaining the Conservative Turn*. Singapore: ISEAS.
- Crouch, Melissa. 2012. “Indonesia’s Blasphemy Law: Bleak Outlook for Minority Religions.” *Asia Pacific Bulletin* 146: 1-2.
- _____. 2017. “Negotiating Legal Pluralism in Court: Fatwa and the Crime of Blasphemy in Indonesia.” Gary Bell, ed. *Pluralism, Transnationalism and Culture in Asian Law*. Singapore: ISEAS.

- Damayanti, Annisa Ulva. 2018. "Jalan Panjang Kasus Penistaan Agama Ahok, dari Al Maidah 51 hingga PK." *Okezone News* February 26.
- Deakin, Christine. 1976. "Langit Makin Mendung: Upheaval in Indonesian Literature." *Archipel* 11: 85-105.
- Detiknews. 2018. "Ini Dia SKB Pelarangan Ahmadiyah." *Detiknews*. June 09.
- Hasan, Noorhaidi. 2017. "Religious Diversity and Blasphemy Law: Understanding Growing Religious Conflict and Intolerance in Post-Suharto Indonesia." *Al-Jami'ah: Journal of Islamic Studies* 55(1): 105-126.
- Hassan, Riaz. 2006. "Expressions of Religiosity and Blasphemy in Modern Societies." Elizabeth Coleman and Kevin White, eds. *Negotiating the Sacred: Blasphemy and Sacrilege in a Multicultural Society*. Canberra: ANU E Press.
- Hunter, Ian. 2006. "Sacrilege: From Public Crime to Personal Offence." Elizabeth Coleman and Kevin White, eds. *Negotiating the Sacred: Blasphemy and Sacrilege in a Multicultural Society*. Canberra: ANU E Press.
- Irawan, Andi Muhammad. 2017. "They Are Not Muslims: A Critical Discourse Analysis of the Ahmadiyah Sect Issue in Indonesia." *Discourse & Society* 28(2): 162-181.
- Lawton, D. 1993. *Blasphemy*. University of Pennsylvania Press.
- Levy, L. W. 1995. *Blasphemy: Verbal Offense against the Sacred, from Moses to Salman Rushdie*. UNC Press Books.
- Magnis-Suseno, Franz. 1984. *Etika Jawa: Sebuah Analisa Falsafi tentang Kebijaksanaan Hidup Jawa*. Jakarta: Penerbit Gramedia.
- Mahkamah Konstitusi. 2012. "Putusan Nomor 84/PUU-X/2012." Jakarta: Mahkamah Konstitusi.

- Menchik, Jeremy. 2014. "Productive Intolerance: Godly Nationalism in Indonesia." *Comparative Studies in Society and History* 56(3): 591-621.
- Monza, Lil Askar. 2018. "Ini Kronologi Kasus Penistaan Agama Meiliana di Tanjung Balai." *Tempo*. August 23.
- Mudzakkir. 2010. *Tindak Pidana terhadap Agama dalam Kitab Undang-Undang Pidana dan Undang-Undang Nomor 1/PNPS/1965 tentang Pencegahan Penyalahgunaan dan/atau Penodaan Agama*. Jakarta: Kementerian Hukum dan Hak Asasi Manusia.
- Mulder, Niels. 1992. *Individual and Society in Java: A Cultural Analysis*. Yogyakarta: Gadjah Mada University Press.
- Nash, David. 2007. *Blasphemy in the Christian World: A History*.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Putri, Prastiti et al. 2018. "Beda Pendapat Soal Vonis untuk Meiliana." *Detiknews*. August 24.
- Saheed, Abdullah and Saeed, Hassan. 2016. *Freedom of Religion, Apostasy and Islam*. New York: Routledge.
- Sahibi, Naim. 1983. *Kerukunan antar Umat Beragama*. Jakarta: Gunung Agung.
- Schwarz, Adam. 1994. *A Nation in Waiting: Indonesia in the 1990s*. NSW: Allen & Unwin.
- Shakir, Naeem. 2015. "Islamic Shariah and Blasphemy Laws in Pakistan." *The Round Table: The Commonwealth Journal of International Affairs* 104(3): 307-217.
- Sharma, Arvind. 2011. *Problematizing Religious Freedom*. Dordrecht et al.: Springer.
- Sihombing, Uli Parulian et al. 2012. *Ketidakadilan dalam Beriman: Hasil Monitoring Kasus-Kasus Penodaan Agama dan Ujaran Kebencian*

- atas dasar Agama di Indonesia*. Jakarta: The Indonesia Legal Resources Center.
- Silalahi, M. R. M. 2010. "Protecting The One and Only God: A Human Rights Assessment On Indonesian Blasphemy Law." MA Thesis, University of Oslo.
- Subagyo. 1973. *Kepercayaan Kebatinan Kerohanian Kejiwaan dan Agama*. Yogyakarta: Yayasan Kanisius.
- Suryadinata, Leo. 2019. "Identity Politics in Indonesia: The Meliana Case." *Perspective 4*. Singapore: ISEAS.
- Telle, Kari. 2017. "Faith on Trial: Blasphemy and 'Lawfare' in Indonesia." *Ethnos* 83(2): 371-391.
- Tempo. 2017. "Sidang Ahok, Ini Kesaksian Ketua MUI Ma'ruf Amin." *Tempo*. January 31.
- Uddin, Asma. 2011. "Blasphemy Laws in Muslim-Majority Countries." *The Review of Faith & International Affairs* 9(2): 47-55.
- Black, Diamond. 2016. "Pendapat dan Sikap Keagamaan MUI terhadap Ahok Bukan Fatwa, Benarkah Surat Al Maidah Ayat 51 tentang Pemilihan?" <https://www.kompasiana.com/blackdiamond/5826d1a54423bd79346e4821/pendapat-dan-sikap-keagamaan-mui-terhadap-ahok-bukan-fatwa-benarkah-surat-al-maidah-ayat-51-tentang-pemilihan-pemimpin?page=all> (검색일: 2019.12.5.).
- Garnesia, Irma. 2018. "Maraknya Sangkaan Penistaan Agama di Tahun Politik." <https://tirto.id/maraknya-sangkaan-penistaan-agama-di-tahun-politik-cHSL> (검색일: 2019.11.5.).
- Haryanto, Alexander. 2019. "Mengapa Mahasiswa Demo di DPR, Pasal Kontroversi RKUHP Jadi Alasan." <https://tirto.id/mengapa-mahasiswa-demo-di-dpr-pasal-kontroversi-rkuhp-jadi-alasan-eiHT> (검색

일: 2019.12.10.).

- Hekmeijer, F. C. ed. 1918. *Wetboek van Strafrecht voor Nederlandsch-Indie*. Batavia: G. Kolff & Co. <https://www.delpher.nl/nl/boeken/view?coll=boeken&identificer=MMUBL07:000002312:00001> (검색일: 2019.12.5.).
- Hidayatullah. 2005. “Penggagas Sholat Bahasa Indonesia Divonis 2 Tahun Penjara.” <https://www.hidayatullah.com/berita/nasional/read/2005/08/30/40984/penggagas-sholat-bahasa-indonesia-divonis-2-tahun-penjara.html> (검색일: 2019.12.8.)
- MUI (Sumatra Utara). 2017. “Keputusan Nomor: 001/KF/MUI-SU/I/2017 tentang Penistaan Agama Islam oleh Saudari Meliana di Kota Tanjung Balai. Komisi Fatwa Majelis Ulama Indonesia, Provinsi Sumatra Utara.” <http://www.voa-islam.com/read/indonesiana/2018/08/25/59775/fatwa-mui-sumut-soal-kasus-penistaan-agama-di-tanjung-balai/#sthash.17kgrmi3.dpbs>(검색일: 2019.12.10.).
- Mulyartono, Siswo, Rafsadi Irsyad & Nursahid Ali. 2018. “Rekayasa Kebencian dalam Kasus Meiliana di Tanjung Balai.” <https://tirto.id/rekayasa-kebencian-dalam-kasus-meiliana-di-tanjung-balai-cUEe> (검색일: 2019.12.10.).
- Ropi, Ismatu. 2007. “Regulating Worship.” *Inside Indonesia* 89. <http://www.insideindonesia.org/regulating-worship> (검색일: 2019.12.10.).
- Voa Indonesia. 2018. “Kasus Meiliana: Menteri Agama hingga Wapres Beri Dukungan di Tengah Pro-Kontra Netizen.” <https://www.voaindonesia.com/a/meiliana-penistaan-agama-azan-dukungan-menag-wapres/4541550.html> (검색일: 2019.12.10)

Abstract

Blasphemy: Shrinking Religious Freedom and Tolerance in Indonesia

KIM Hyung Jun

Professor, Kangwon National University

In Indonesia, blasphemy charges have been expanded since the 2000s, and targets and methods of application have diversified. While the main target of blasphemy charges in the past was Muslims, it has recently been extended to include non-Muslims, and blasphemy against online materials has also been prosecuted. The widespread application of blasphemy has prompted radical Muslims to realize the effectiveness of this law, which can act as a ready-made sanction against individuals, groups and even non-Muslims who support different Islamic interpretations. As the cases of blasphemy spread through the media, the public also became aware that the blasphemy could be charged for every aspect of religious life, which resulted in strengthening self-censorship. After the background of enacting blasphemy law is explored, this paper examines the ways it is applied and enforced, focusing on recent cases. It will be maintained that blasphemy, which has begun to apply to non-Muslims, has reduced religious freedom and has decreased the degree of socio-cultural tolerance. The situation,

where the Islamic perspective is employed as a key to define inter-religious relationship and religious freedom, allows us to recognize the long-term impact of Islamization on Indonesian society, as opposed to the past where religious tolerance was taken for granted as a characteristic of Indonesian society.

Keywords: Indonesia, Blasphemy, Islamization, Freedom of Expression, Freedom of Religion, Religious Tolerance